

## 회원 계약조건

### \*판매원 정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이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판매원으로 부터 적법하게 전달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시 지쿰(주)에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원 등록

지쿰(주)에 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나 전자문서를 지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판매원가입비 또는 상품 구매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방문판매 법 15조 2항 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미성년자. 다만, 제 4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제 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판매원 자격 취득

신청인은 지쿰(주)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상적인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판매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 \*규정 준수

신청인은 판매원 활동을 함에 있어 지쿰(주)의 모든 내부 규칙, 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금지행위

지쿰(주)의 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 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 아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3.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판매원에게 하위라인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판매원이 그 하위라인 판매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판매원을 지쿰(주)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통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재화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재화의 거래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배송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④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나.

### \*판매원 탈퇴

탈퇴를 원하는 판매원은 탈퇴신청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판매원 자격 해지

지쿰(주)는 판매원이 관련 법률이나 지쿰(주)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판매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해당 판매원이 판매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지쿰(주)로 부터 위반 통지를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쿰(주)는 판매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 계약해지 시 해당 판매원은 계약 해지 시까지 달성한 지위를 상실합니다.

### \*후원수당의 고지

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판매원들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와 기타 지쿰(주)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 등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은 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 환불(반품)규정

1. 소비자(등록 판매원 포함)는 소비자 기본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원(전화 : 02-3460-3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정정경제부고시 제2004-19)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원이 지쿰(주)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 제 16조, 제 7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위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지쿰(주)의 등록판매원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 등을 하고 등록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쿰(주)에게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판매원이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반환시의 비용공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0%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 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구매계약서에 판매원 구매인지 소비자 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금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3.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 (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지금에서 제외된다.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금에서 제외된다.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7.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금에서 제외된다.
8. 누구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 및 02-2058-08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 신청서

• 회원 이름	• 회원 번호	• 연락처
• 생년월일	• 탈퇴요청일	년 월 일
• 철회사유		
상기본인은 년 월 일자로 지쿰 회원을 탈퇴합니다.		
지쿰(주) 귀하		

■ 당사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의 개인정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